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전문직위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군)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직위군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나.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다. 전문직위 전문관의 전보 제한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설정하되, 전보 제한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3항 신설)

라.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우대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가점 부여, 수당 지급 등 근거규정을 둠(안 제51조의2제4항 신설)

마. 전문직위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위임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5항 신설)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군 내에서 전보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u></p> <p>① <u>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u></p> <p>② <u>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u></p> <p>③ <u>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군 내에서의 전보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u></p>

전문직위군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